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



보건복지부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CONTENTS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I.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
1. 아동 권리에 대한 각성
2.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
3.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 역사

II. 아동학대 현황
1. 연도별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
2. 아동학대 사례 유형 및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관계

III. 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1. 아동학대 유형
2. 아동학대 의심징후
3. 아동학대 체크리스트

IV.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요령
1. 의료인의 신고 의무
2. 우리나라의 신고 현실
3. 아동학대 신고방법
4. 신고 시 주의사항
5. 신고 시 의료인의 역할과 신변보호 방법
6. 신고 이후 협조

V. 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법률과 신고
1.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
2. 아동학대 전담공무원
3. 아동보호전문기관
4. 아동학대 개입 모범사례

VI. 아동학대 신고관련 Q&A

Ⅰ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아동의 권리에 대한 각성

1924 국제연맹

-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

1949 국제연맹

- ‘아동권리헌장’ 개정 선언

1989 유엔 ‘아동권리 협약’ (UN Conventions on Rights of the Child: CRC)

- 국제적 수준의 아동권리 선언
-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

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

2.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

아동학대

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
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
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
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아동학대 범죄



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
형사처벌 또는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한정하여
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

Ⅰ 아동의 권리 및 아동학대 대처의 역사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3.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대처 역사

1989 — **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설립**

2000 — **아동복지법 개정**
- 아동학대의 정의, 유형 명시
-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

2003 — **대한의사협회의 노력**
- 아동학대 대응 가이드라인 출간
- 병원의 '학대아동보호팀' 출범

2014 — **특례법 시행**
-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

2019 — **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**
(아동권리 및 국가책임 강화)
- 체벌(징계권) 금지 노력
-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(조사 공공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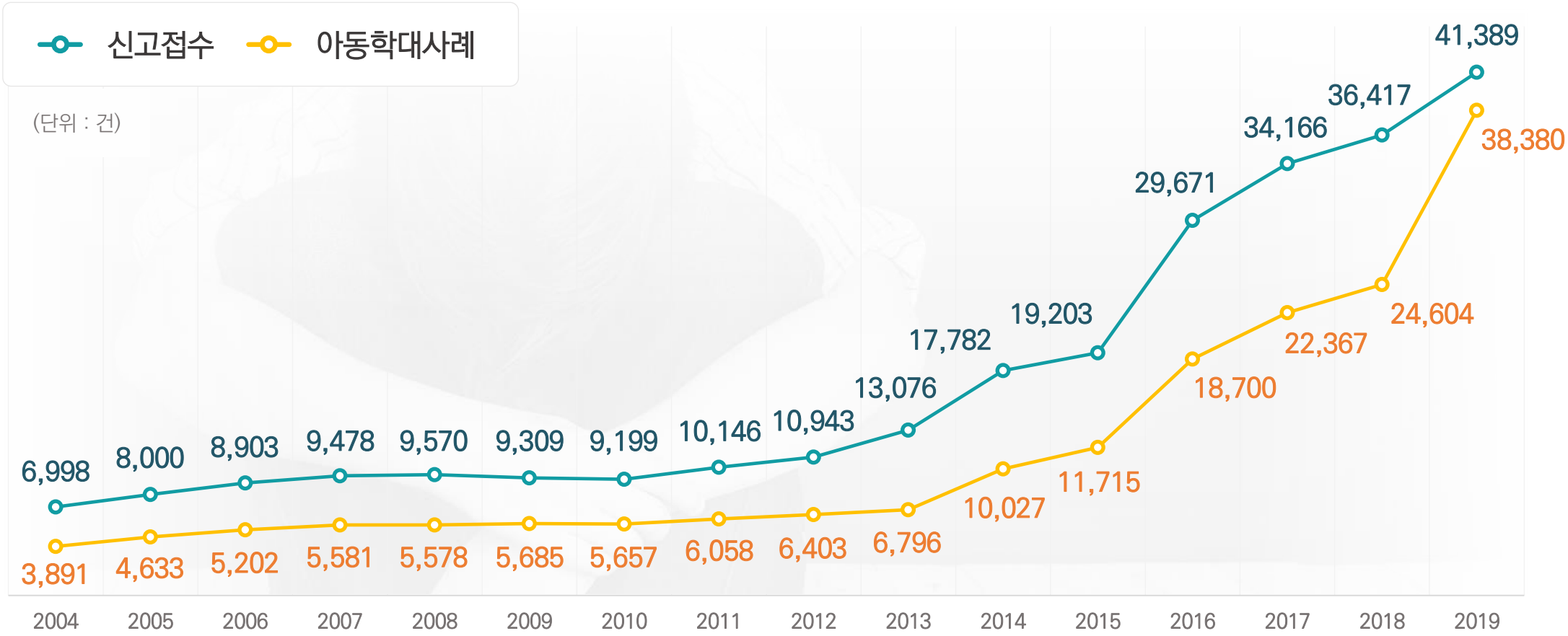
2020 — **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**
- 10.1.부터 시도/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

2021 — **전국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황**
- 현재 전국아동보호 전문기관 69개 운영 중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1. 연도별 신고접수 및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

| 출처 : 〈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〉, 보건복지부·아동권리보장원, 201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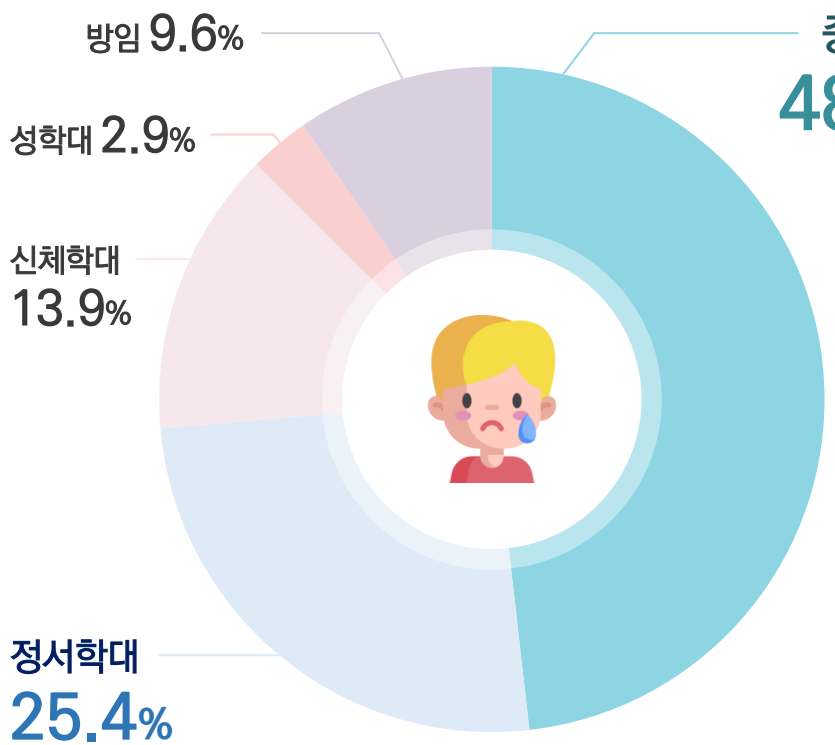
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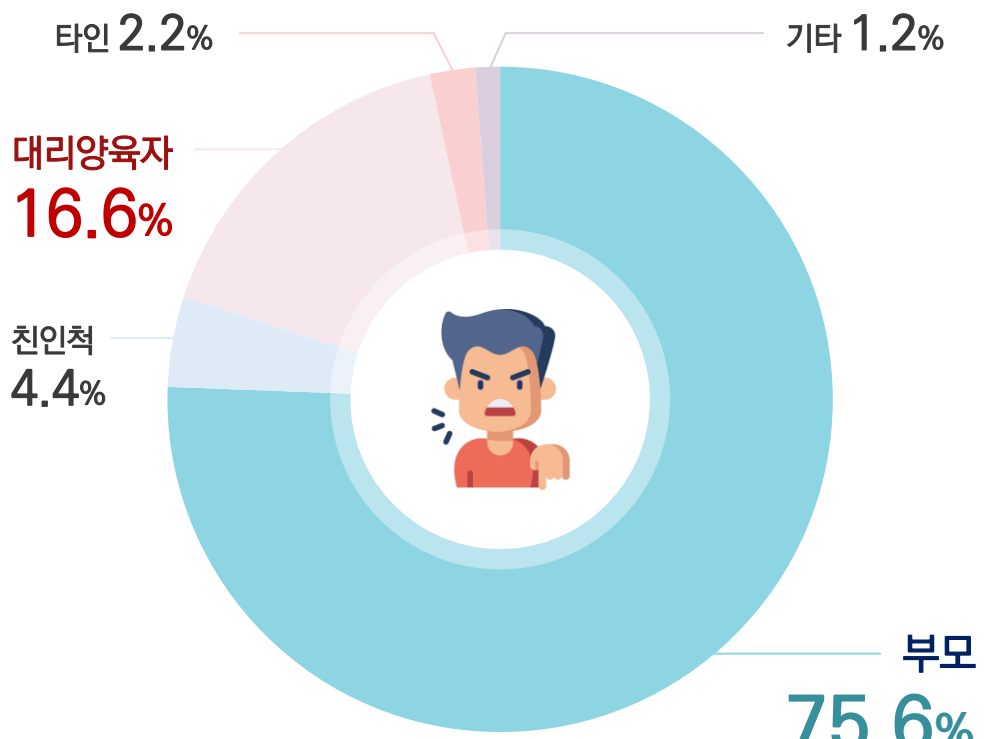
2. 아동학대 사례유형 및 학대행위자와 아동의 관계

| 출처 : 〈2017 장애인 실태 조사〉,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2017

아동학대 사례유형



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



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
1. 아동학대 유형 (「아동복지법」 제 3조 제 7호)

1 아동학대 유형 1 : 신체학대

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

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
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
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

(한 대만 때려도 학대로 판단)

2 아동학대 유형 2 : 정서학대

언어폭력, 정서적 위협, 감금 및 억제

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
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
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

(예. 공포심 유발, 부부싸움이나 폭력 노출,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위)

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
1. 아동학대 유형 (「아동복지법」 제 3조 제 7호)

3 아동학대 유형 3 : 성 학대

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

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
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
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

(예. 성기 노출 요구,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, 아동을 나체로 체벌)

4 아동학대 유형 4 : 방임 · 유기

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모든 행위



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- **방임** :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, 의무교육,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
- **유기** :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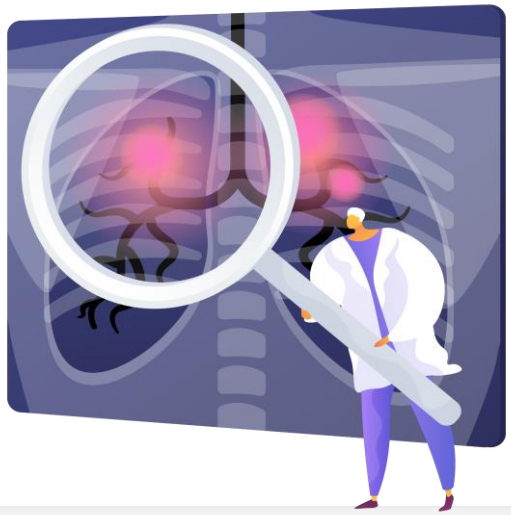
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
2. 아동학대 의심징후

신체적 징후



-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
- 발생・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
- 겨드랑이・팔뚝 안쪽・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
-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
- 비위생적 신체상태
- 지속적으로 나는 악취
- 의료적 처치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
- 임신
- 생식기에 생긴 상처・긁힌 자국
- 항문 손상
-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
- 발달지연・성장장애



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
2. 아동학대 의심징후

행동적 징후



- 어른과의 접촉 회피
- 부모(보호자)에 대한 두려움
-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
- 자살시도
-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
- 성적 묘사를 한 그림
-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
- 유아적 행동(퇴행행동)
- 우울・불안
- 수면장애
- 저조한 학업수행
- 잦은 결석



아동학대 유형 및 의심징후

3. 아동학대 체크리스트

1개 이상 체크 시 즉시 112 신고

- ☐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.
- ☐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.
- ☐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,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.
- ☐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,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.
- ☐ 기아, 영양실조,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.
- ☐ 계절에 맞지 않는 옷,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.
- ☐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.
- ☐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.
- ☐ 성학대로 의심될 성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.
- ☐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.
- ☐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.
- ☐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.
- ☐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.
- ☐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집(보호기관)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.

Ⅳ 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요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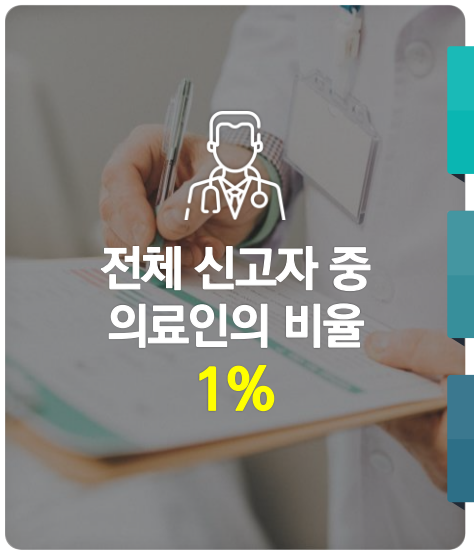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1. 의료인의 신고 의무

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경우에는
수사기관(112)에 신고하여야 한다. – 「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

2. 우리나라의 신고 현실

| 출처 :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, 보건복지부/아동권리보장원



의료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

01 인식의 부족
- 아이는 때려서 키운다는 잘못된 인식

02 교육 및 지식의 부족
-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
- 신고절차를 모르거나 아동학대 관련 교육이 없는 경우

03 신고 후 처리 과정에 대한 불안
- 보복이나 소송

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요령

3. 아동학대 신고 방법



01 **신고자 정보 및 욕구** (신변 보호 요청, 아동과 면담 시 주의사항 등)

02 **아동 인적사항** (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연락처, 교육기관 등)

03 **아동의 현재 상황** (안전여부)

04 **학대행위의심자 인적사항** (이름, 성별, 나이, 주소, 연락처, 아동과의 관계 등)

05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 및 상황

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몰라도 '미상'으로 신고 가능

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요령

4. 신고 시 주의사항



01 • 진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학대상황을 묻지 않고 112에 신고

02 • 아동을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

03 •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며 일상적으로 대할 것

04 • 몸에 상흔이 있는 경우, 증거 사진 촬영

05 •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, 발견 상태 유지

5. 신고 시 의료인의 역할과 신변보호 방법

01 의료인의 역할 : 의심되면 즉시 신고

- 신속한 신고가 가장 중요
- 병원 내 아동보호팀이 있더라도 의료인 본인 생각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아동보호팀을 거치지 않고 즉시 신고

02 명백한 학대선언, 범인 지목 필요 없음

-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범인 지목 없이 '가해자 미상'으로 신고 가능

03 신변보호방법

- 신고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기재 생략 가능
- 신변의 위협을 느낄 경우,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
- 「아동학대처벌법」, 「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」, 「공인신고자보호법」에 의거 신고자 보호 가능

아동학대 신고 방법 및 요령

6. 신고 이후 협조

아동학대 전문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

-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
-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혹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속 전달



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법률과 신고

1.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

「아동복지법」 개정('20.10.1. 시행)에 따라 시군구 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
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, 기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기능 강화

시군구

시군구에 배치된
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아래 업무 실시

- 피해아동 및 가족,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조사
- 신고접수
- 현장출동 및 조사, 응급보호
- 피해아동 보호계획 수립

아동보호전문기관

아동학대 전담 사례관리기관으로서의
역할 수행

- 피해아동 및 가족, 행위자를 위한 상담, 치료, 교육
-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
-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
- 아동학대예방사업 관련 업무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2. 아동학대 전담공무원



법적 근거

0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— 「아동복지법」 제22조

- 아동학대 신고접수, 조사, 응급보호 등의 **업무수행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함.**

02 현장출동 / 조사 —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1조, 제11조의2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,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함.

03 응급조치 / 임시조치 —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2조, 제14조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재학대 위험이 급박한 경우,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신청을 요청함.

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법률과 신고

2.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주요업무



신고접수

- 24시간 신고접수 가능
- 112



현장조사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경찰 동행 출동
-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집
- 아동학대 사례판단



피해아동 보호조치

-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
- 치료위탁, 가정위탁 등



학대행위자 임시조치

- 제지 및 격리, 접근금지
- 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
- 상담 및 교육 위탁

아동학대 대응체계 및 법률과 신고

3. 아동보호전문기관

법적 근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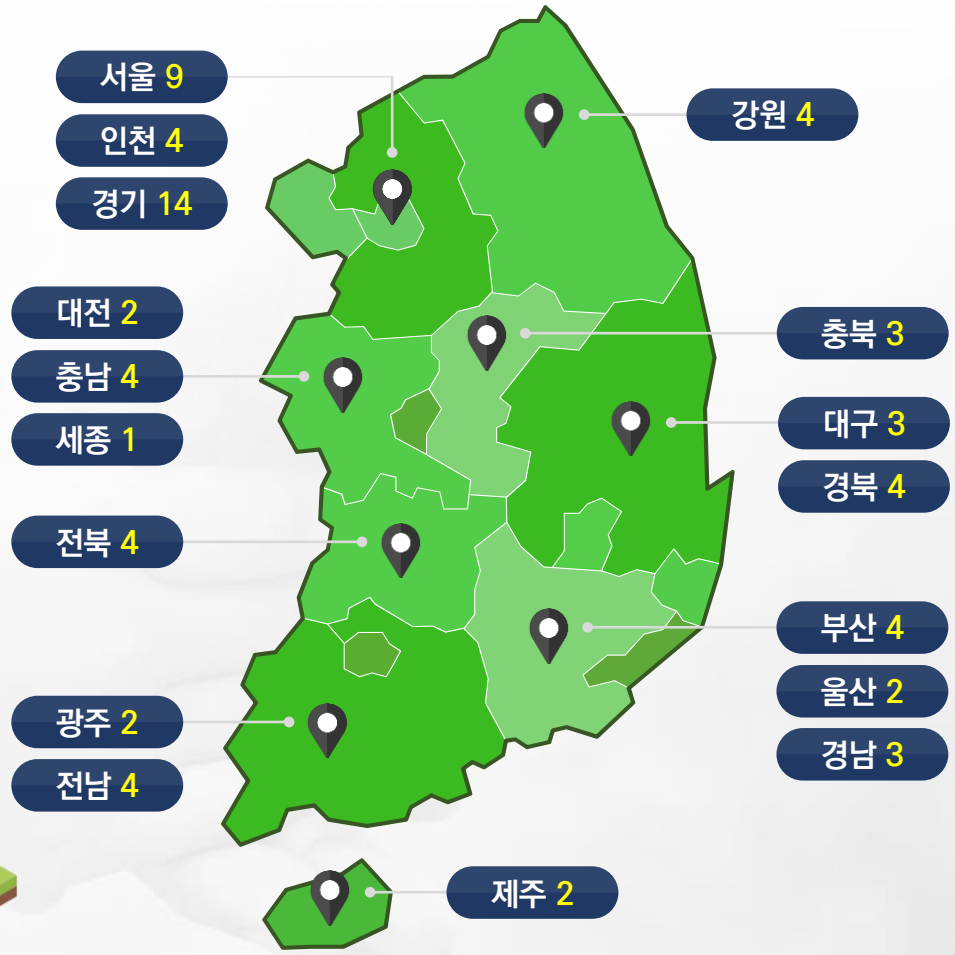
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「아동복지법」 제45조

- 학대 받은 아동의 **치료, 아동학대 재발 방지** 등 **사례관리**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**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.**



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

69개소



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3. 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업무



피해아동 및 가정 사례관리

- 상담 및 의료지원 (통원 및 입원)
- 심리치료
- 학습지원
- 사회복지서비스 연계
- 가정지원 (경제 및 가사지원)
-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



학대행위자 사례관리

- 보호처분
- 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
- 교육프로그램 운영
- 심리치료
- 의료지원 (통원 및 입원)
- 가정지원 등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4. 아동학대 개입 모범 사례

1 신고 접수

- 의사 A씨는 의식을 잃고 이송된 B군(12세)을 진찰하던 중 하지골절 발견

친모의 진술 • "혼자 놀다 넘어졌다"

엑스선 촬영 • 이전에도 동일 부위 골절 + 심한 외부충격에 의한 골절

- 아동학대 신고 : ☎ 112

2 현장 조사 결과

- 아동이 늦게 일어나 등교 준비 미흡하자 머리채 잡고 계단으로 밀어버린 상황
- 학대행위자(친모)에 의한 신체/정서학대로 판단

3 신고 접수

- 학대행위자(친모) : 심리검사 시행 후 심리 치료

초기 • 개별치료, 6회

+

중기 • 학대행위자 치료프로그램, 9회

4 사후 관리

- **사례종결** : 학대행위자의 태도 변화

개별치료 5회 이후 • 학대행위자의 태도 변화

심리검사에서 친모 상태 호전 • 조절능력 생기며 아들과 관계 호전

모자치료 8회 이후 • 모자치료 14회 후 치료 종결

5 사후관리를 위한 연계기관 결정

- **사후 모니터링** : 한 달 간격으로 방문 하여 상담



VI 아동학대 신고 관련 Q&A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

Q1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병원으로 출동하나요?

– '지구대'의 '정복 경찰'이 즉시 출동하며, 시간 여유가 있다면 '경찰서'의 '아동학대전담경찰관' 또는 '아동학대전담공무원' 동반 요청이 가능합니다.

Q2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? (입퇴원 여부)

– 아동학대 정황이 애매한 상황에서는 퇴원 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통상 진료를 수행합니다. 그러나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기관 방문자가 방문할 때까지 병원에 체류하기를 권유합니다.

Q3 신고 후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한가요?

① 증언/폭로, 가족 관계, 의심되는 가해자 등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.
② 입원이나 전원에 협조 및 병원비나 간병인 지원 등으로 피해 아동을 보호합니다.
③ 필요 시 전문의나 상급자와 협의하여 소견서, 진술서 등을 작성합니다.

Q4 보호자가 스스로 아이를 때린 것을 인정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

– 재학대 예방을 위하여 부모(보호자) 대상으로 교육, 상담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Q5 학대행위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?

– 학대행위자 모두가 범법자나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. 학대 정도나 법률 위반 정도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대상 또는 상담/교육 대상이 됩니다.

Q6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?

– 언론보도로 신고자와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터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. 피해아동 개인정보나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위법입니다.
특히 의사로서 인지한 정보를 인터뷰하는 것은 「아동학대처벌법」 제10조 3항, 제35조에 의해 위법입니다.

출처

Institutions Providing Assistance with Health Professionals

-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, 2020, 보건복지부/질병관리본부/아동권리보장원/대한소아응급의학회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, 2021, 아동권리보장원



보건복지부

h·well 국민건강보험공단